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16. 12. 0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세입예산안

- 도시공간개선단의 세입예산은 2,382만원임. 이는 조직신설 이전인 2014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성동구로 교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시비보조금) 1억 3,000만원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2017년에 한해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임.

(단위 : 천원)

사 항 별	2017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23,821	-	23,821	100%
세외수입	23,821	-	23,821	
임시적세외수입	23,821	-	23,821	
시도비반환금수입	23,821	-	23,821	

II. 세출예산안 총괄

1.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일반회계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01억 9,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3억 2,800만원보다 68억 6,200만원(206.2%) 증액된 것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7 예산(안)	2016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10,190	3,328	6,862	206.2

2.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1건, 성과목표 2건,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3건, 세부사업 13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략 목표	예산액	비율(%)
	합 계	10,190	100.0
전략목표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공간디자인 실현” 성과목표 2, 정책사업 2, 단위사업 3, 세부사업 13	10,068	98.8
-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123	1.2

Ⅲ.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1.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82만원으로 이는 도시공간개선단 조직신설 이전인 2014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성동구 “성수 수제화거리 안내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교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3,0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17년에 한해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68억 6,2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1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00만원이 증액(18.3%)되었으며, 사업비는 100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8억 4,300만원이 증액(212.3%)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7 예산(안)	2016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10,190	3,328	6,862	206.2
사업비	10,067	3,224	6,843	212.3
행정운영경비	123	104	19	18.3

- 신규사업은 4건, 81억 4,642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업무	16억1,760만원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2억2,500만원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8억382만원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55억원

- 계속사업은 9건, 19억 2,085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2억4,300만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9,184만원
건축학교 운영	1억1,300만원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4,027만원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	2억6,200만원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개선 실행전략 수립	6억원
서울시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1억1,974만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2억6,500만원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1억8,600만원

2.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없음

3.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1건, 성과목표 2건,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3건, 세부사업 13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책사업목표별 예산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9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2억 4,300만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9,184만원
건축학교 운영	1억1,300만원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4,027만원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	2억 6,200만원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55억원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실행전략 수립	6억원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8억원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2억2,500만원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16억1,800만원

- 둘째,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3개 사업에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울시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1억2,000만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2억6,500만원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1억8,600만원

IV. 2016년도 신규예산사업 : 총 4건, 81억 4,642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안
1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4.20 서울시 자체 건축기획이 가능한 기관 구축 검토(시장요청사항) - '16.4.29 주요사업 추진과정 실태점검 결과보고(기획조정실)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목적 : 주요 도시공간사업 자체 구상, 우수 건축물 설계공모추진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도시공간의 활용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기획 - 기획 자문단 운영을 통한 공간기획 및 사업 내실화 - 자체기획 바탕으로 사업추진과 우수한 공공공간 및 건축물의 생산을 위한 설계공모 추진 	1,617,600
2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시장요청사항('14.2.셋째주) ○ 사업기간 : 2017.5. ~ ○ 사업목적 : 고가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 공공문화공간 확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즈카페, 마을도서관 등 지역 공공문화시설 운영 - 태양광 기술을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 	225,000
3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서울 도시건축센터' 설립 방침 (시장방침 제322호, '15.11.05) ○ 사업기간 : 2017. 7~12. ○ 사업목적 : 문화산업의 플랫폼이 될 '서울 도시건축센터' 설립 운영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도시건축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카이브 구축 - 시민 및 전문가를 위한 전시·교육·연구 공간 조성 - 공유 창작 및 창업공간지원 등 신진건축가 지원 	803,817
4	2017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건축비엔날레 개최(시장요청사항)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5조 제2항 제8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사업기간 : 2017.1~2017.12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도시건축 정책의 중심지로서의 서울 도시건축 정체성 확립 - 서울의 건축 디자인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및 국제교류 기회 마련 - 시민참여 및 소통확대를 통한 도시 거버넌스 가치 실현 ○ 사업내용 : 전시 및 서울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공유도시(Imminent Commons) - 장소 : DDP 및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주제전 및 도시전) · 서울랩(민·관·학 협업 프로그램) · 행사(개막식, 세계도시정책서밋 등) 	5,500,000

V. 검토 의견

1.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①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속사업 및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계속사업

[사업별설명서 11쪽, 16쪽 ; 예산안 999쪽]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6년 5억 5,500만원에서 2017년 2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52% 감액되었음.
- 주요 감액사유는 2016년도 사업예산 중 “서울도시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홍보관 설치 운영”사업비 4억원을 2017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공공건축 주요사업 국내외 홍보 및 어워드 준비”예산으로 변경하고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임.
- 반면, 워크샵 및 세미나 비용을 2016년 1,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증액하고,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비를 신규 편성(2,100만원)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B)	증감 (B-A)	(B-A)*100/A
계		505,000	243,000	262,000	51.8
사무관리비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 용역	45,000	44,000	△1,000	2.2
	워크샵 및 세미나	10,000	28,000	18,000	1.8
	공공건축가 자문 수당	50,000	-	△50,000	-
	추천위원회 운영	-	21,000	21,000	-
	홍보비	400,000	150,000	△250,000	62.5

-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연구용역 축소 및 학술세미나 개최 횟수를 줄여 2016년 1억 5,000만원에서 2017년 8,2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국외업무여비는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에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300,000	175,900	91,836	△84,064	△48
사무관리비	282,000	150,900	81,836	△69,064	△46
국외업무여비	-	15,000	-	△15,000	△100
민간인국외여비	18,000	10,000	10,000	-	-

-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지적 사항으로 수의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바 있음에도, 사전 계획수립 없이 소규모 연구용역비를 여러 사업에 중복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임.
- 이에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용역” 예산은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사업의 “용역 등 연구과제 수행” 예산 4,000만원과 함께 하나의 예산과목으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두 사업에 공통적으로 책정된 “워크샵 및 세미나” 예산 역시 예산편성액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사업예산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¹⁾ 등 공공건축 주요사업 국내외 홍보 및 어워드 준비”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자치행정과의 요청에 따라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동주민센터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대한 해외 홍보, 전시 등을 주도하며 본래 사업의 취지와 사업부서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어 자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음.

②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 계속사업

[사업별설명서 28쪽; 예산안 1,000쪽]

- 이 사업은 2016년에 추진된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 사업”의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내용 중 ‘시민 교육프로그램’을 “건축학교 사업”으로 편성하고, 도시건축 정책 교류 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²⁾를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과목 및 산출내역을 조정하며 2016년 7억 470만원에서 2017년 2억 6,2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설계공모 건축홈페이지 구축사업(2억 8,900만원)이 완료되고, 사무관리비를 4억 84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임.
- 행사운영비는 6,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6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시건축 정책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래 사업내용은 복지플래너가 빈곤위기가정이나 고령가구, 출산가정 등을 방문하여 복지서비스 수요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거나, 복지상담전문관이 일자리 및 의료, 사회복지, 공공복지서비스 등 민원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제공하는 사업임

2) 자치단체가 직접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인쇄비, 홍보물 제작, 강사료, 임차료, 식비 등 포함)

중 일부(427만원)를 행사실비보상금³⁾으로 전용한 결과를 감안한 것으로, 2017년에는 서울시가 직접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며, 올해 4차례 개최한바 있는 해외전문가 초빙 세미나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 ‘외빈초청여비’를 신규 편성하였음.

〈도시건축 교류 해외 전문가 특강 개최내역〉

구분	일시	강의자	대상	강의제목
1차	‘16.2.23	리니어 그래프 (네덜란드)	관련전문가, 일반시민 등 (50여명)	The Asian Centery
2차	‘16.3.29	도미니크 페로 (프랑스)	관련전문가, 일반시민 등 (200여명)	GRONDSCAPE
3차	‘16.6.13	플로리안 베이겔 (영국)	관련전문가, 일반시민 등 (200여명)	Architecture as City 3 urban projects in Seoul
4차	‘16.7.22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스페인)	관련전문가, 일반시민 등 (500여명)	Posthuman Cosmologies

- 다만 2017년 사업예산의 사무관리비 중 “도시·건축 문화진흥 대학 협업사업”의 경우 2,000만원 소요용역 3건으로 총 6,000만원, “도시·건축 문화 교류사업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액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규모 용역으로 발주하여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산이며, 따라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도 예산액의 일부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 사무관리비 ◦ 도시·건축 문화저변 확산을 위한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 - 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진행 - 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 도시건축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건축 문화 진흥정책사업	(단위 : 천원) 408,390 11,000 54,340 343,050	■ 사무관리비 ◦ 도시건축 정책 교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 ◦ 도시건축 문화 진흥 대학 협업 사업 ◦ 도시건축 문화 교류사업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단위 : 천원) 50,000 60,000 6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전산개발비	7,000 289,298	■ 행사운영비 ◦ 도시건축 정책 교류 국내외도시간 사업 ■ 국외업무여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1,000 15,000 7,000
		■ 외빈초청여비	9,000
합 계	704,688		262,000

3)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③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32쪽; 예산안 1001쪽]

- 이 사업은 서울과 세계도시간의 도시·건축현안에 대한 국내·외적 교류와 함께 도시 건축·디자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2년(홀수년)단위로 개최되는 행사이며,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와 같은 해에 개최될 예정임.
- 사업비는 총 55억원으로 지난 7월 27일 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제270회 임시회 안건으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11월 7일에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출연금이 확정된 사업임⁴⁾.
-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55억원을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출연하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재단 내에 설치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에서 행사 진행 등을 담당하게 됨.
-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행사이며 세계건축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번 행사결과를 토대로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향후에는 “베니스비엔날레”, “이스탄불비엔날레”와 같이 세계적인 국제 행사에 견줄 수 있는, 서울시 대표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시 재정을 출연하여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디자인재단과의 원만한 소통과 협력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경주해야 할 것임.

④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실행전략 수립 계속사업

[사업별설명서 37쪽 ; 예산안 1001쪽]

- 이 사업은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분야별 실행전략 수립 및 통합구상”을 위해 2016년 사업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반시설 주변지역 도시구조 조사분석” 용역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변연계 가능한 지역 자원간 통합적 커뮤니티 구축” 용역을 실시할 계획임.
- 2017년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사무관리비 6천만원, 시설비 5억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사업예산대비 17% 감액된 규모임.

4) 시 투자심사대상 : 5억원 이상 30억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중앙 투자심사대상 : 시 또는 자치구 30억이상 행사성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x-)
계	(x-)	(x-) 728,000	(x-) 600,000	(x-) △128,000	(x-) △17
사무관리비	(x-)	(x-) 129,000	(x-) 60,000	(x-) △69,000	(x-) △53
기타보상금	(x-)	(x-) 25,000	(x-)	(x-) △25,000	(x-) △100
시설비	(x-)	(x-) 574,000	(x-) 540,000	(x-) △34,000	(x-) △5

- “시설비”의 예산내역으로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분야별 실행전략 수립 및 통합 구상”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주변지역 도시구조 조사 분석” 3억원, “전통시장 중심 주변 지역지원 연계 통합적 커뮤니티 거점조성계획 수립” 2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있음.
- 그러나 하나의 예산과목 내에서 2개 이상의 개별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용역추진 계획 등을 마련하여 개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기술용역발주 시 전문가 자문회의비 및 세미나, 워크샵 개최비용을 일부 포함하여 발주하게 되므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여 예산의 중복채정·집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음.

<사업 주요내용>

-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분야별 실행전략 수립 및 통합 구상(시설비, 5억 4,000만원)
 - 도시기반시설 주변지역 도시구조 조사 분석(3억원)
 - 근린공원, 공공시설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 권역별 현황조사
 - 개별 지역자원 간 연계 활용방안 구상
 -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연계 가능한 지역자원간 통합적 커뮤니티 거점 구축(2억 4,000만원)
 - 전통시장 및 주변 연계 가능 거점공간 현황조사
 - 전통시장을 매개로 지역문화 거점 간 연계 활용계획 수립
 - 지역 상생을 위한 이식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⑤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41쪽 ; 예산안 1001쪽]

- 이 사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2015년 5월 7일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기부채납 예정부지에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가칭 “새문안 동네”)을 수립하며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당시에는 기부채납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를 근거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일반재산의 위탁 및 개발을 결정하며 투자심사 절차는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되었음.
- 2015년 10월 8일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4조를 근거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시공, 인허가, 시설물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에 지급하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③ 제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2015년 11월 5일에는 “도시건축센터 설립계획”이 수립되며 11월 20일자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업무가 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과)에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관되었음.
- 이후 한일건설과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2016.6.23)하며, 7월 26일 종로구청 건축허가 및 7월 27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총 사업비 200억원을 선투자하여, 향후 30년간 임대료 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할 계획임.

<추진경위>

- '03.11.18 : 교남뉴타운 지구지정
- '05. 3.10 : 교남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
- '06.10. 9 : 도시환경정비구역 명칭변경(교남 → 돈의문)
- '14. 5.15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 '14.12. 6 : 돈의문1구역 사업시행인가
- '15. 5. 7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시행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00호)
- '15. 5.28 : 설계 대행계약 체결(서울시 ↔ SH공사)
- '15. 6.11 :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제)
- '15. 7.28 : 설계용역 계약 체결(건축사사무소 기오현)
- '15. 7.28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추진 (SH시장방침 제718호)
- '15. 8.28 : 돈의문 박물관마을 자문회의(총괄건축가, 주거사업기획관 등)
- '15. 9.23 : 서울 도시건축센터 설립 논의(도시재생본부장, 문화기획관, SH공사 등)
- '15.10. 8 :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SH공사 사장)
- '15.11. 5 : '도시건축센터' 설립 방침(시장방침 제322호)
- '15.11.20 : 돈의문 박물관마을 관련업무 인수(주거사업과 → 도시공간개선단)
- '15.11.24 : 총괄사업관리자 및 기반시설 대행협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의결(SH공사)
- '15.12.30 : 총괄사업관리자 및 기반시설 대행협약 체결
- '16. 6.23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계약 체결(한일건설)
- '16. 7.26 : 건축 허가(종로구청)
- '16. 7.27 : 공사착공(한일건설)
- '16. 7.28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 9. 8 :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 향후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도시건축센터 및 공유협업공간 4개소”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담당하고, “돈의문 전시관 5개동”은 서울역사박물관, “유스호스텔 1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24개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할 계획임.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송월길 14-9일원 (대지면적 : 10,324㎡)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 (문화시설)
- 규 모 : 박물관마을 조성 (총41동 : 리모델링 30, 증축 2, 개축 7, 이축 2)
- 사 업 비 : 약 200억원 (SH공사 선 투자 후 임대료 수입으로 사업비 회수)
- 주요 사업내용 : 도시건축센터(건축전시관+공유협업공간), 돈의문전시관, 유스호스텔, 공방 등

구분	합 계	공익시설(51%)		수익시설(49%)			비고
		도시건축센터	커뮤니티시설	식당/공방	유스호스텔	상 가	
연면적	9,086.09	4,196.07	400.57	1,988.38	814.37	1,686.70	
비율	100%	46%	5%	22%	9%	18%	

- 이 사업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문화마을”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4조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가 200억원을 초과함에도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5)에 따른 의회 의결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활용한 것이며, 향후 기부채납 부지의 소유권 이전 완료 및 위탁개발사업 협약 체결시 지방투자심사 및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미 대행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된 사업장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될 뿐이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음.

5)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또한 도시건축센터를 설치할 경우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과 조직,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건축센터 설립의 당위성 또는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생략한 채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향후 설치예정인 “도시건축박물관”은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아닌 세종대로 인근에 위치하는 등 예산책정의 차원을 넘어 정책기조에 대한 결정이 우선인 것으로 사료됨.
- 이 사업예산은 2017년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및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총 8억 382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사업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의 총괄적인 예산심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 시설비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58,000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단위 : 천원) ◦ 상설전시실 운영보조 ◦ 기획전시실 운영보조 ◦ 공유협업공간 등 운영보조	26,635 26,635 53,270
		■ 사무관리비 ◦ 기획전시실 운영 ◦ 상설전시실 운영 ◦ 공유협업공간 4개소 운영 ◦ 도시건축센터 홍보(영상 및 홍보물발간) ◦ 도서발간 ◦ 자문회의 비용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전기료 및 각종 공과금 등) ◦ 청사관리용역비	50,000 40,000 50,000 50,000 12,000 3,750 20,000 4,750
		■ 행사운영비 ◦ 서울 도시건축센터 개관식 ◦ 도시건축세미나 및 공공건축 문화행사 등	50,000 30,000
		■ 전산개발비 ◦ 홈페이지 구축	244,277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복합기 4대 ◦ 빔 프로젝트 5대 ◦ 프로젝트 스크린 5대 ◦ 컴퓨터 및 모니터 20대 ◦ 노트북 5대 ◦ TV 10대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구매	16,000 15,000 1,500 40,000 5,000 15,000 50,000
합 계			803,817

⑥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45쪽 ; 예산안 1,002쪽]

- 서울 전역의 고가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문화공간 조성을 기획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옥수역 고가하부공간을 시범사업으로 조성하여 사업검증 및 실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 고가 하부 공간 활용방안은 지난 2014년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에서 서울연구원의 학술용역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의 유휴 고가하부공간은 총 185개소로 집계됨.
- 2015년 11월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예산 및 사업공정관리 등 총괄지원업무’를 담당하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공간 활용 방안 마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옥수고가하부 공간을 위한 시설공사비는 2016년 교량안전과 예산으로 총 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후 내진공사 및 방음벽 교체공사와 일정 중복으로 발주가 지연되며, 2017년 사업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었음.
- 이 사업은 안전총괄본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공공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운영비와 사무기기 및 집기류 구매비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향후에는 자치구 신청에 의한 선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겠으며, 자치구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서울시의 예산부담을 줄이면서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추진경위>	
• ‘14. 3 ~ 12	: 고가하부 점용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교량안전과)
• ‘14. 6 ~ 9	: 하부공간 사용실태 및 재구성 방안 연구(서울연구원)
• ‘14. 3 ~ `15. 7	: 고가하부 목록화 및 활용방안 마련
• ‘15. 8.20	: 하부공간 활용방안 시장보고
• ‘15. 8 ~ 10	: 시범사업 대상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시설물관리기관 의견수렴
• ‘15.10.21	: 총괄부서 지정 등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부서 검토회의
• ‘15.11	: 2016년 시범사업 예산 8억원, 고가하부 공간활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2억8,800만원 편성(교량안전과)
• ‘15.11.25	: 업무총괄 및 지원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공간활용 방안 마련 및 추진 → 도시공간개선단
• ‘16. 5.25	: 집단지성광장 토론회 및 시범사업 대상지 결정(도시공간개선단)
• ‘16. 6.14	: 성동구 옥수역 고가하부 공간개선 시범사업 활용계획 접수
• ‘16. 6.22	: 시범사업 활용방안 수립

⑦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49쪽 ; 예산안 1002쪽]

- 이 사업은 201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분석⁶⁾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세부 사업계획 수립조차 없이 ‘기획관련 협업을 위한 용역’이라는 산출내역으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다만, 예산안 제출일 이후인 11월 16일 시장방침을 통해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 중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및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구상·기본계획”과, “설계비 추정가격 2.1억원 이상”인 설계공모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구체적으로 2017년도에 수행할 기획용역은 계획되지 않았음.
- 특히 관계부서와의 사전협의 과정이 부족하여 2017년 예산안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의 예산과는 별개로 부서별 기술용역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 중복 책정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재정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는 기획관련 협업 용역 6억원 전액을 삭감해야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도시공간개선단의 설치취지와 업무범위, 특성을 감안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시범적인 사업모델 구축을 조건으로 일부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음.
- 설계공모 사업비의 경우 2016년 설계공모 사업은 총 13개⁷⁾로, 2017년 목표 실적을 20개로 설정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개당 4,000만원의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⑧ 기타 검토예산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미반영

-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임기제 지방부이사관으로 3급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⁸⁾가 편성되어있지 않음.

6) 201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서울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p.258 참조

7)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참조(<http://project.seoul.go.kr>)

8)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 이는 지난 2015년 4월 감사원 감사 시, 그동안 관례적으로 책정하던 시 본청 4급 이상 과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당편성에 대해 지적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로 판단됨.
- 다만 “2017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보면, 시·도 국장의 경우 2급은 연 990만원, 3급 이하는 연 660만원이 지급 기준액이며 ‘공무원교육원장을 포함한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기관을 포함(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하고 있고, ‘국장급 보조기관을 제외한 본청 과장급, 전문위원 등 지방4급에 대하여는 편성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채용공고시 개방형 3호⁹⁾로 공개모집됨에 따라 3급 또는 4급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에 해당하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미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직제 상 지방기술서기관에 해당하는 도시공간개선반장 1인과 8인의 지방 기술(행정)사무관을 관리하는 3급 지방부이사관에 해당하는 직위이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반영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는 있겠음.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정의되어 있으며,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 지급 불가 예산임

9) ①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②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5급 경력 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③ 경력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예산 미반영

-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자치구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러나 현재 수립·추진 중인 제3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2015년 7월부터 추진되었으며 2016년 7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번 제271회 정례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조례제정보다 먼저 수립되어오면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포함하기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향후 제4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는 조례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2017년 예산으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예산편성을 요구한바 있으나 사전절차 미비 등을 사유로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 참고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으며, 제출된 2017년 예산안 중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7억6,88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 명시이월 : 없음

3. 종합검토

- 2017년도 도시공간개선단 편성 예산 101억 9,000만원으로 전년예산(33억 2,800만원)대비 2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금 55억원을 제외하여도 46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액된 수준임.
- 이번 예산안은 도시공간개선단 설치 후 두 번째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국제행사비용 및 자체공간기획업무, 도시건축센터 설치 등 외형적 실적 및 조직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도시공간 기획업무는 부서별 업무 또는 사업 중 공간활용·연계 측면에서 접근 하기에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의견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소통의 부족, 실적 및 용역위주의 예산편성과 타부서 사업의 이관, 불분명한 정책기조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또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소액 수의계약 용역예산을 편성하거나 여러 사업에 동일예산을 중복 편성하고,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됨.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올바른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히 예산의 규모가 큰 도시공간 개선단의 고유기능인 “공간기획업무”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 등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유념해야할 것임.